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6081
등록일자	2015.4.15.
결재일자	2015.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주무관	규제개혁법제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직위대리	구청장
황세윤	박도규	김용운	문경수	주윤중	04/16 신연희
협조자					

- 우리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2차 일괄개정(안) 최종 확정

□ 일괄개정 개요

○ 개정 대상 : 17개 조례

○ 주요 개정 사항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개정
- 법령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조문 개정
- 알기 쉬운 용어, 맞춤법 등 정비

□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입법예고 : 의견 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부패영향 평가 : 의견 전부 반영완료

2015. 4.

강 남 구
(기 획 예 산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자치법규 정비) 																											
추진 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경위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을 전수조사 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체계확립 및 규제개혁 성과제고에 기여 																											
예산 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치법규 집행 공무원 및 자치법규의 적용을 받는 시민 전체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 5px;">① 관련부서 협조</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0)</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⑤ 시장조사</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0)</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 5px;">()</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① 관련부서 협조	-----	(0)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0)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0)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0)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타 기관 사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자체 사례 조사(충남 아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인천 남동구 등) 																											
전문가 자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검토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2차 일괄개정(안) 최종 확정

법제처 정비대상 중 2차 일괄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성별·부패 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배사항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 등을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의 기초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2차 일괄개정 추진 계획」(기획예산과-4600)과 관련임

I 개정 개요

■ 개정 대상 : 17개 조례, 정비사항 59건 [총 10개 부서]

- ▶ 기존 계획에는 20개 조례였으나, 3개 조례에 대하여 별도 개정사항이 추가 발생하여 부서에서 자체 정비예정

■ 중점 정비사항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이탈, 불일치 포함)
-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 자치법규 입법기본원칙 위반
- 인용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그 밖의 사항

■ 추진 현황

- 기본계획 수립 및 입법 예고 완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및 성별영향평가(보육지원과) 완료

II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오기 정정 및 용어 반복 회피(안 제1조 개정)

나.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을 “민간위탁이란”으로, “구산하기관”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으로 개정하여 모호한 규정의 해석상의 논란 차단(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개정)

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를 규정(안 제6조 제1항 개정)

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규정 신설(안 제 7조 3항 신설)

마.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바. 위탁 사실의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3항 신설)

사. 불필요 규정 삭제(안 제13조 삭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문 수정

- “지사 또는 사무소”를 “출장소”로 수정(안 제3조제2항)
-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안 제8조제4항)

나. 법령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조문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상위법령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 삭제 (제3조제1호 바목 삭제)

나. 중앙부처 직제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개정 (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

다. 행정절차법 규정에 위배되는 규정 개정(안 제7조제2항)

라.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으로 지방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용”을 “준용”으로 개정(안 제22조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법령·조례·규칙”을 “조례·규칙”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을 바로 잡음(안 제1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공청회 시 통지대상 중 조례에 누락된 “정보통신망에 대한 의견 제출” 규정을 추가 (안 제11조제2항)
- 나. 중앙부처 직제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개정 (안 제15조제8항)
- 다. 법령상 근거 없는 제출의무 부과 사항 삭제 (안 제22조제4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중앙부처 직제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개정 (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다.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및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인터넷 민원’ 용어 정의를 전자정부법 제9조로 변경하여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함 (안 제2조제4호)
- 나. 민원담당부서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 다. 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담당자의 비밀번호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안 제21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변경되는 상위법 제명 반영(안 제1조)
- 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반영(안 제2조제4항, 안 제6조)
-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4조, 안 제4조의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불일치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문 개정 및 삭제
 - 가. 삭제 : 안 제2조제2호, 제13조제1항 단서, 제17조, 제24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
 - 나. 일부개정 : 안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3조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6호,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2항, 제38조제3항, 제47조제2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 규정한 각 호의 규정을 삭제

가. 삭제 : 안 제6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나. 일부개정 :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항 개정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서울특별시세이므로 구세 감면조례에서 이에 대한 제외여부를 규정할 필요가 없음, 상위법령(지방세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괄호 안 부분 삭제(안 제3조)

나.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부합하도록 감면 적용기간을 3년의 기간으로 제한하고 감면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 8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지방문화원법」에 위배된 조항 삭제(안 제7조, 제13조, 제16조)

나. 「지방문화원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사업내용 수정(안 제9조)

다. 「단기금융법」의 1998.1.13. 폐지로 조문 삭제(안 제10조)

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배 및 중복되어 삭제(안 제 12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행사주관자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책임 손해배상 규정 삭제(안 제12조)

나. 위탁기간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맞게 위탁 갱신 규정 수정(안 제1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상위법령을 단순히 중복 규정하거나 상위법령인 조례가 하위법령을 인용하도록 한 안 제10조, 제20조, 제23조제2항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개정 및 삭제 함.
- 나.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만료일을 연월일로 명확하게 규정 함.
- 다. 기금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현행 조문에 맞지 않는 일부 자구 수정(안 제6조제3항)
- 나. 상위법령 위반 조항 삭제(안 제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함. (안 제3조제5호)
- 나. 위촉위원의 연임횟수 규정함(안 제5조제1항)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재난안전과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3조제2항 일부개정)
- 나.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및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
(안 제3조의2 일부개정, 안 제3조의3 신설)
- 다. 근거법령에 의거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를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시 개최”로 변경(당초 “매년 1회 개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조제1항 일부개정, 같은조 제2항 삭제)
- 라. 위원장에게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어 1인 2표 행사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 검토의견에 따라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변경(안 제5조제4항)

III

입법예고 및 협의결과

■ 입법예고 : 2015. 3. 27 ~ 4. 16 (20일간)

▶ 의견제출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 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협약 체결 시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마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장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 중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규정 신설

IV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15. 4. 23.
- 강남구의회 상정[제 239회] : 2015. 5. 14 ~ 5. 21
- 2차 일괄 개정조례안 공포 등 : 2015. 6. 5. (예정)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